

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(제13조의2제1항 관련)

1. 대상기관: 진료과목에 재활의학과를 두고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를 수행하는 기관

2. 인력 기준

가. 필수인력은 재활의학과 전문의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언어재활사,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이며, 선택인력으로 임상심리사를 둘 수 있다. 또한, 필수 인력과 선택인력을 고려하여 다직종팀을 구성해야 한다.

나. 가목에 따른 인력의 최소기준은 다음과 같다.

| 구분   | 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준    | 다직종팀 구성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필수인력 | 재활의학과 전문의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이상 | 재활의학과<br>전문의 포함<br>4개 직종 이상 |
|      | 물리치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이상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작업치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이상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언어재활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이상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사회복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이상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간호사[입원(낮병동 포함)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] | 1명 이상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선택인력 | 임상심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이상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다. 나목에도 불구하고 위의 인력 기준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3. 시설 기준

가.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를 위한 물리치료실, 작업치료실, 언어치료실을 갖추어야 한다.

나. 가목에 따른 각 치료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.

4. 장비 기준

제3호에 따른 치료실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5. 어린이 재활치료 환자 수

해당 의료기관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은 18세 이하 연간 환자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자수 이상이어야 한다.
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